

20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1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문석호	044-201-1791
		사무관 오재협	044-201-1728
		주무관 이병길	044-201-179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1부	부장 백종철	02-3775-6799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부	부장 강구하	02-3786-7631

I.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83,723	382,849	383,081	383,477	414,710
보 조	217,233	215,862	215,978	216,176	232,836
자부담	166,490	166,987	167,103	167,301	181,874

*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가능

4.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II.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가입자격 및 요건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보험가입금액(생산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옥수수·콩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100만원 이상인 농지, 벼·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50만원 이상 농지는 보험 가입가능
 -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 벚꽃재배사와 벚꽃작물은 경작면적 300m² 이상, 차(茶)는 1,000m²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

3. 세부 사업내용

(1) 보험대상 농작물 및 사업 지역

- 본사업 : 사과·배(적과전종합위험 포함)·단감·감귤·뽕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포도·벼·인삼·느타리·버섯·표고버섯·복숭아·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
- 시범사업

구 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분자·오디·차·단감(적과전종합위험)	사과(적과전종합위험)	시설미나리·밀·양배추·오미자·뽕은감(적과전종합위험)	무화과·유자·시설썩갓	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작물수	4	1	5	3	4

-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4개월전까지 확정 통보

(2)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구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비고
특정위험보장	사과·배·단감·뽕은감	태풍(강풍)·우박·지진·화재 (특약)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 일소피해·나무보상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 화재·우박	
적과전종합위험	사과·배·단감·뽕은감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적과후)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 화재, 지진 (특약)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나무보상	
종합위험보장	참다래·매실·자두·복숭아·포도·유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나무보상	
	밤·대추·오디·오미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고추·마늘·양파·고구마·콩· 옥수수·차·감자·양배추·밀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단, 감자, 고추는 병충해 보장
	농업시설·시설작물·버섯재배사·버섯작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 먹노린재)	
	감귤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11.30일 이전) (특약) 나무보상, 동상해(12.1일 이후)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특약) 나무보상	
	해가림시설(인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 화재	

(3)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미리 협의

(4) 보장유형 : 붙임2

(5)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
 - 다만, 비의 경우 동일 계약자의 농지는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가입이 원칙
 - *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사업관리기관이 승인하는 경우는 여러 개의 증권으로 보험가입 가능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단지는 도로, 독,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가 인접한 단지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6)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3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농·축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7) 보험료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료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시·군별 요율 적용
 - 다만,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은 시·군·구별 요율 적용

- 사과, 배, 벼는 시·군별 보험요율의 분포를 고려하여 요율 상한선 설정 가능
- 보험료 할인·할증의 종류는 품목별로 다르며, 품목별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종류: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방재시설별,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할증, 전년도 무사고 할인 등

(8)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9)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10) 재보험(붙임4 참조)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 체결
-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 가능
 -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을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재보험요율 등 재보험계약내용 및 실적현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4.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 용도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순보험료 지원 : 50% 보조. 단, 아래 품목(5개)은 보장수준별로 40~ 60% 차등 보조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등록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붙임5 참조)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벼	60	55	50	50	50
보조율 (%)	배·단감·사과·뽕은감 (적과전종합)	-	60	50	40	40

-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영업비, 모집수수료 등 지원) : 100% 보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기초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판매기간, 보험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전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 연구·개선, 손해평가사 교육,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법 제8조), 재보험사업약정체결(법 제20조) 실시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촉진계획, 운영비 사용계획서, 손해평가인 교육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2. 보험 상품 개발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 등의 승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보험 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 현장의견·자체검토사항,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 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상품개선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등 참석대상 확대 가능)
- 품목별 상품개선안, 보험료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품목별 최종 상품개선안 재해보험사업자에 통보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며 상품 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
- 보장내용,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 변경사항 발생 시 상품개선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재해보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요율검증보고서 등)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3. 사업시행 단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품목별 가입시기와 지역별 예상 보험료를 지자체에 제공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대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제도 홍보,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 매월마다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며, 보험사고 접수현황, 추정보험금 등 파악
-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상품교육·홍보 실시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교부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를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교부 신청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제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계약자 및 목적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재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을 재해보험사업자에 요구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의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제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면적, 대상품목 증가 수(목표는 매년 초 사업추진 계획에 따름)
 - 성과지표 측정(매년)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후 가입면적, 대상품목 증가 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 주 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1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전년도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수, 보험가입률,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붙임 1>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 참외·풋고추·호박·국화· 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 부추·시금치·배추·가지· 과·무·백합·카네이션)	전 국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월~11월 (표고 원목재배는 6~7월)
사과·배·단감·뽕은감	전 국	2월~3월 (단, 봄동상해 특약은 3.23까지)
벼	전 국	3월~6월
밭	전 국	4월
대추	전 국	4월
감귤	전 국	4월
고추	전 국	4월~5월
고구마	전 국	4월~6월
옥수수	전 국	4월~6월
감자	전 국 (단, 고랭지감자 는 강원도)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7월~9월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6월~7월
콩	전 국	6월~7월
마 늘	전 국	(난지형) 10월~11월 (한지형) 10월~11월
양 과	전 국	10월~11월
인 삼	전 국	10월~11월
자 두	전 국	11월
매 실	전 국	11월
포 도	전 국	11월
복숭아	전 국	11월
배(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본
사
업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시 범 사 업	시설작물 (미나리·쑥갓)	전 국	2월~11월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전 국	2월~11월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차	(전남)보성 (경남)하동	10월~11월
	밀	광주광역시,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남)사천, (충남)천안·예산	10월~11월
	오디	(전북)부안, (전남)영광, (경북)상주·안동	11월
	복분자	(전북)고창·정읍·순창, (전남)함평·담양	11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 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11월
	무화과	(전남)영암	11월
	유자	(전남)고흥	11월~12월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뽕은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메밀	(제주)제주·서귀포	7월
	브로콜리	(제주)제주·서귀포	7월

-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중지될 수 있음
- ※ 밀줄 친 품목 및 사업지역은 '18년 신규 도입 및 신규판매 지역임

<붙임 2>

보장방식별 품목별 보장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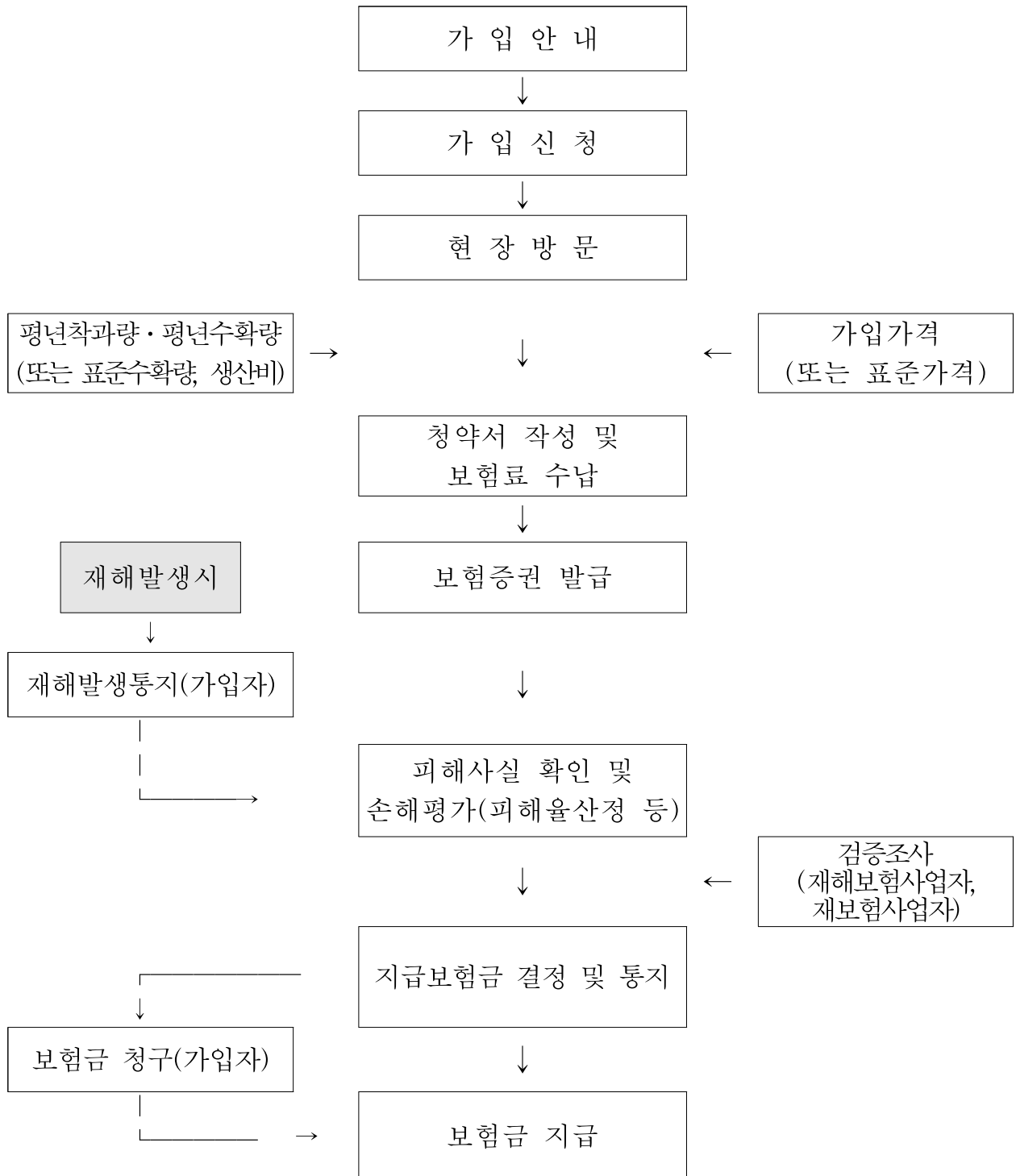
구분	보장방식	품목	보장수준(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과수작물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사과, 배, 단감, 뽕은감	-	○	○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오미자	○	○	○	○	○
		유자	○	○	○	-	-
	종합위험방식 실손보장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오디, 감귤	○	○	○	○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배, 단감, 사과, 뽕은감	-	○	○	○	○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복분자	○	○	○	○	○
무화과		○	○	○	-	-	
밭작물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고구마, 옥수수, 고랭지 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	○	○	○
		양배추	○	○	○	-	-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인삼	○	○	○	○	○
	종합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해가림시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 의 1% 해당금액으로 적용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고추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가입 금액의 3% 또는 5% 해당 금액으로 적용				

구분	보장방식	품목	보장수준(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벼·맥류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벼, 밀	○	○	○	○	○
원예시설	종합위험방식 실손보장	농업용시설물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벼섯작물	종합위험방식 실손보장	벼섯재배사, 부대시설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느타리벼섯, 표고벼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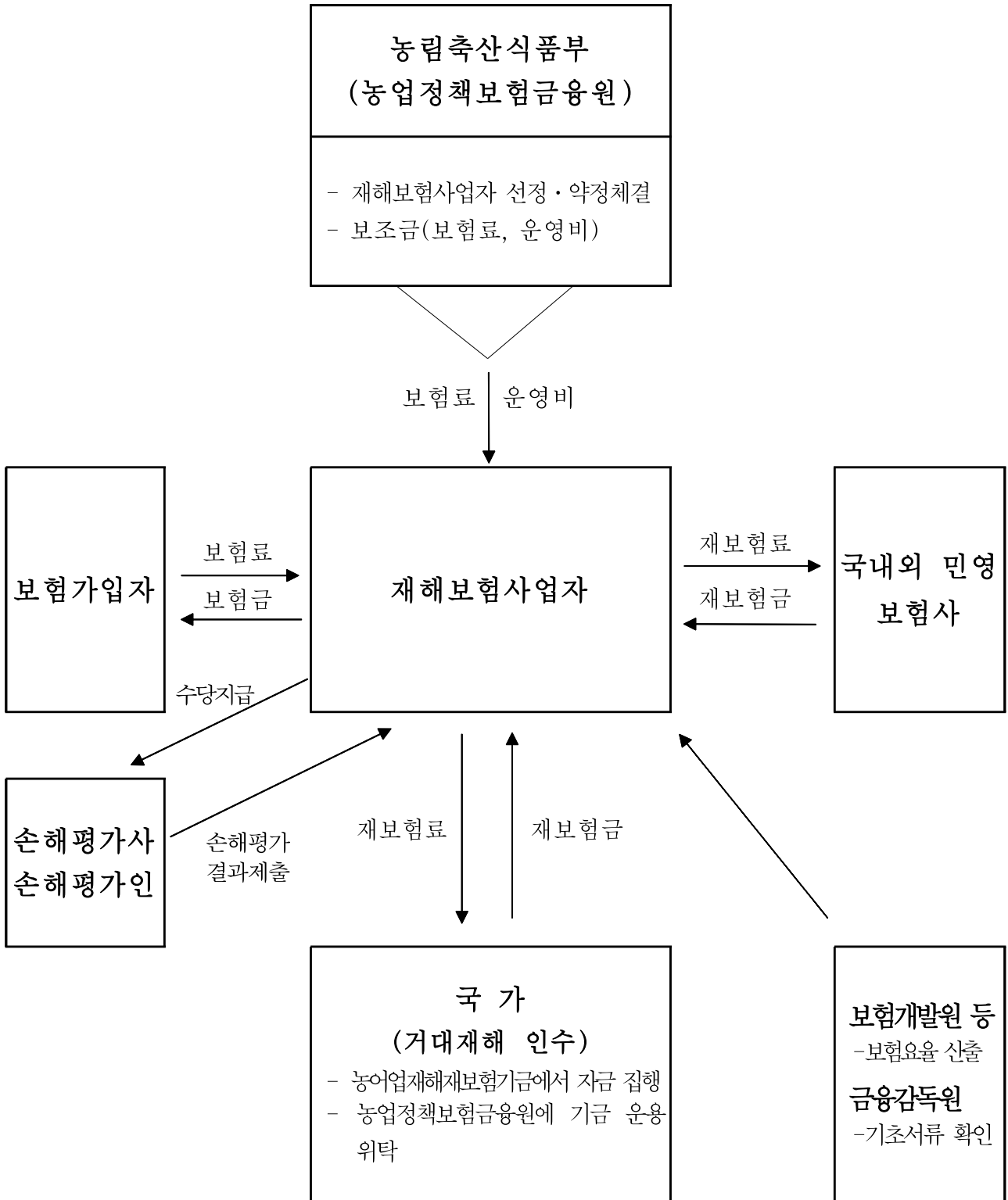
※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 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 등록정보 : 5개 부분 총 56개 항목
 - 농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의 농업인)·농업법인 일반현황, 농지·축산정보 등
 -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 등의 정보는 제외
-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전산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
 - 처리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등록절차	등록 방법
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
접수 및 전산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농업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제출서류 확인 및 필요 시 신청사항에 관한 현지조사 등 병행
등록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직불금·경영체 통합 신청 시 90일 이내에 발급

※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